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7호, 2009.12.31.)

◇ 개정이유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 소득자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법 제12조)

-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제20조 및 제22조 등)

-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 2)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및 제52조 제8항)

-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법 제45조 제3항 단서 신설)

-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법 제47조)

-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
-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

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법 제 52조 제4항)

- 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법 제56조의2제1항 및 법 부칙 제14조)

- 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
- 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

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제55조)

- 1)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2)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함

파.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제59조)

-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법 제69조 제4항·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
-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거.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법 제74조)

- 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
- 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법 제101조 제2항)

- 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더.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법 제119조의2제4항 신설)

- 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 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

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법 제121조 제2항)

- 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머.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법 제156조의3)

- 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법 제162조의3제4항)

- 1)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
- 2)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居所(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현행	개정
<u>제1조(납세의무)</u> ①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 1. <u>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u> 2. <u>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u> ②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 1. ~ 2. (생략) 3. <u>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u> 4. <u>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5. <u>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u> ③ <u>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u> ④ <u>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 <u>제2조(납세의무의 범위)</u> ① <u>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u>	② <u>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조(납세의무)</u>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 1. <u>거주자</u> 2. <u>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 1. <u>거주자</u> 2. <u>비거주자</u> 3. <u>내국법인</u> 4. <u>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5. <u>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u> ③ <u>「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u> 〈삭제〉 <u>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u> ① <u>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u>

현행	개정
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u>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u>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삭제 ④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2호의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u>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u>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2호의 동

현행	개정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 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u>종합소득</u> <u>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u> 2. 퇴직소득 <u>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3. 양도소득 <u>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u> ② <u>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u>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u>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u>	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 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u>종합소득</u> <u>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u> <u>가. 이자소득</u> <u>나. 배당소득</u> <u>다. 사업소득</u> <u>라. 근로소득</u> <u>마. 연금소득</u> <u>바. 기타소득</u> 2. 퇴직소득 <u>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3. 양도소득 <u>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u> ② <u>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u>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u>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u>

현행	개정
제5조(과세기간) ① <u>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u> ② <u>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u> ③ <u>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u>	제5조(과세기간) ① <u>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u> ② <u>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u> ③ <u>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u>
제6조(납세지) ① <u>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u> ② <u>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u> ③ <u>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u>	제6조(납세지) ① <u>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u> ② <u>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u> ③ <u>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u>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u>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u> 1. <u>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u> 2. <u>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u>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u>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u> 2. <u>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u>

현행	개정
체류지로 한다. 3. <u>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u> 4. <u>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u>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u>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u>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u>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u> ② <u>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u>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는 체류지로 한다. 3. <u>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u> 4. <u>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u>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u>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u>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u>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u> ② <u>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u>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현행	개정
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u>납세지</u>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u>소득세 납세지</u>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u>소득세 납세지</u>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u>소득세 납세지</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

현행	개정
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	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 조부터 제10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

현행	개정
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신설〉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현행	개정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 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 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현행	개정
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 제) 4의3. 연금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신 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年金)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현행	개정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u>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u> 라. <u>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u> <u>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u>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u>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u> 바. ~ 사. (삭 제)	보로금 다. 「상훈법」에 <u>따른</u>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u>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u>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u>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u>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u>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u>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3조(세액의 감면) ① <u>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은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u> 1. <u>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u> 2.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 제 ③ 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삭 제)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u>종합소득과세표준</u>”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u>종합소득과세표준</u>”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u>종합소득금액</u>”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u>종합소득공제</u>”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

현행	개정
<u>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소득의 소득금액</u> 2. <u>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u>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u>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u>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u>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u>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u>소득금액</u>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u>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u>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u> 5의2.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u>기타 소득금액</u>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총연금액</u>	<u>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u>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u>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u>금융회사등</u>”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u>소득</u>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u>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 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u>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u> 8.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u>기타소득</u> 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u>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u>

현행	개정
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u>종합소득과세표준</u>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타소득금액</u> ④ 삭 제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⑦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u>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u>기본세율</u>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u>종합소득 과세표준</u>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타소득</u>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u>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

현행	개정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이자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삭 제)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 제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현행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삭제)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현행	개정
<u>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u>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u>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u>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u>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u>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u>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u>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u>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u>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u>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현행	개정
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u>주식 및 출자</u>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삭 제)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u>상법</u>」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삭 제) 4. <u>합병으로 인하여</u>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u>합병으로 인하여</u>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u>합병으로 인하여</u>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u>합병으로 인하여</u>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u>소요된</u>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u>규정에 의한</u>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u>당해</u>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u>분할로 인하여</u>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u>분할로 인하여</u>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u>금전 기타</u> 재산가액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u>주식·출자</u>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u>상법</u>」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u>합병으로</u>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u>합병으로</u>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u>합병으로</u>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u>합병으로</u>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u>사용한</u>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u>따른</u>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u>분할로</u>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u>분할로</u>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u>금전, 그 밖의</u> 재산가액의 합계

현행	개정
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현행	개정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석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행	개정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

현행	개정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u>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u>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중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중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u>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u>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u>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u>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현행	개정
<u>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u> 〈신설〉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

현행	개정
<u>받는 연금</u>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u>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u>(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u>지급받는 연금</u> 〈<u>신설</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u>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u>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u>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u>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u>)에서 제47조의2의 <u>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u> ④ 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u>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u>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u>받는 연금</u>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u>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u>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u>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u>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u>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u>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u>다음 각 호에서 규정</u>

현행	개정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삭제)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 나. (삭제)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삭제)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	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선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

현행	개정
하고 받는 금품 10. ~ 11. (삭 제) 12. <u>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u>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u>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u>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u>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u>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u>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u>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u>인세</u> 다. (삭 제) 16. ~ 18. (삭 제)	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u>소유자가 없는 물건</u>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u>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u>〈단서 삭제〉</u>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u>그 밖에</u>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u>인세(印稅)</u>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현행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삭 제)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u>기타</u>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u>당해</u>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u>기타</u>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u>가목부터 다목까지</u>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 24. (삭 제)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서화</u>·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u>당해연도</u>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u>소요된</u>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u>용역은</u>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u>받는</u>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u>그 밖에</u>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u>그</u>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u>그 밖의</u>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u>그 밖에</u>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u>받는</u>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서화(書畵)</u>·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u>해당 과세기간</u>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u>사용된</u> 필요경비를 공제한

현행	개정
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중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중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

현행	개정
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은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	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

현행	개정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단서 신설) ② 거주자가 <u>채고자산</u>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u>소비하거나</u>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u>소비</u>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u>상당하는</u> 금액은 <u>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u> 사업소득금액 또는 <u>기타소득금액의</u>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부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u>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u>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u>거주자의 채무의</u>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이월결손금의 <u>보전에</u> 충당된 금액은 <u>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u>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u>부동산임대소득</u> 또는 <u>사업소득</u>의 계산에 있어서 <u>전년도로부터</u> 이월된 소득금액은 <u>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u>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임업·어업·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	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항 조에서 “<u>보증금등</u>”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u>사업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u>산입(算入)</u>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u>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u>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u>채고자산(在庫資産)</u>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u>소비하거나</u>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u>소비하거나</u>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u>해당하는</u> 금액은 <u>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u>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u>기타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u>해당 과세기간의</u> <u>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u>무상(無償)</u>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u>채무의</u>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u>제45조 제3항에 따른</u> 이월결손금의 <u>보전(補填)</u>에 충당된 금액은 <u>해당 과세기간의</u> <u>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u>사업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 <u>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u> 이월된 소득금액은 <u>해당 과세기간의</u> <u>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

현행	개정
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증기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u>제2관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u>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u>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u>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u>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u> ② <u>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u> ③ <u>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u>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u>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u>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u>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u>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u>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u>제2관 필요경비</u>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u>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u>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u> ② <u>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u>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u>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u> ③ <u>필요경비의 계산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u>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u>대손충당금의 처리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u>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행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현행	개정
①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3조(필요경비부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u>소득할주민세</u>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u>의한</u> 벌금 또는 과료에 <u>상당하는</u>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u>가산한</u>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u>기타 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u>그러하지</u> 아니하다. 10. 차입금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삭 제) 12. 법령에 <u>의하여</u>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u>아니거나</u> 법령에 <u>의한</u>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u>따른</u> 벌금 또는 과료에 <u>해당하는</u>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u>과세기간</u>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u>따라</u>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u>더한</u>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u>제외한</u> 다. 10. 차입금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u>따라</u>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u>아닌</u> 공과금이나 법령에 <u>따른</u>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u>과세기간</u>에 지출한 경비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u>따라</u>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현행	개정
14. <u>선급비용</u> 15. <u>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u>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u>규정이</u>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순서에 따라 <u>이를 적용한다</u>.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필요경비부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 ① <u>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산</u>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u>사업자의 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에 <u>해당 연도의 필요경비</u>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14. <u>선급비용(先給費用)</u> 15. <u>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u>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순서에 따라 <u>적용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u>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u>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산</u>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u>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u>을 계산할 때에 <u>필요경비</u>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현행	개정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삭 제)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	2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

현행	개정
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u>비영리재단법인</u>에 한한다) 다. ~ 자. (삭 제)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신 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	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u>비영리 재단법인</u>만 해당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행	개정																
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삭제 -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수입금액</th><th>적용율</th></tr> <tr> <td>100억원이하</td><td>1만분의 20</td></tr> <tr> <td>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td><td>2천만원 +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만분의 10</td></tr> <tr> <td>500억원초과</td><td>6천만원 + 500억</td></tr> </table>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 +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 + 500억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수입금액</th><th>적용률</th></tr> <tr> <td>100억원 이하</td><td>1만분의 20</td></tr> <tr> <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 분의 10)</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6천만원 + (500억원을</td></tr> </table>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 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 +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 + 500억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 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현행	개정				
<table border="1" data-bbox="219 304 615 403"> <tr> <td data-bbox="219 304 404 403"></td><td data-bbox="404 304 615 403">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td></tr> </table>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u>아니한 것에 대하여는</u>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것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table border="1" data-bbox="762 304 1182 403"> <tr> <td data-bbox="762 304 933 403"></td><td data-bbox="933 304 1182 403">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td></tr> </table>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 것은</u>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u>대통령령으로</u>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현행	개정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

현행	개정
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현행	개정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②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④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현행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u>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u>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불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u>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u>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u>사업소득</u>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u>사업소득</u>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

현행	개정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u>허위로</u> 정하는 등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u>소득세를</u> 상속인에게 과세할 <u>것은</u>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u>소득세와</u>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u>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u> <u>비치·기장한</u>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연도의 <u>종합소득과세표준의</u>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u>순차로</u> 공제한다.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u>거짓으로</u> 정하는 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u>같은</u>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u>소득세로</u> 상속인에게 과세할 <u>것과</u>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u>소득세는</u>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u>사업자가</u> <u>비치·기록한</u>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u>계산할 때</u>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과세표준을</u> 계산할 때 <u>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u> <u>순서대로</u> 공제한다.

현행	개정
〈신설〉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현행	개정
니하다.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등이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현행	개정																								
<u>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u>중도해지로 인하여</u>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u>있어서는</u>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u>규정에 의하여</u> 과세표준 및 세액의 <u>경정</u>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u>대하여는</u>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th><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100분의 80</td></tr> <tr> <td>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td><td>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td></tr> <tr> <td>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td><td>90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tr> <tr> <td>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td><td>1천 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tr> <tr> <td>4천500만원 초과</td><td>1천 275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td></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 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 275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u>중도 해지로</u>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u>따라</u> 과세표준 및 세액의 <u>경정</u>(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u>대해서는</u> 해당 <u>과세기간</u>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th><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td>총 급여액의 100분의 80</td></tr> <tr> <td>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td><td>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td></tr> <tr> <td>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td><td>90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tr> <tr> <td>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td><td>1천 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tr> <tr> <td><u>4천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u></td><td><u>1천275만원 + (4천 50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u></td></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 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u>4천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u>	<u>1천275만원 + (4천 50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u>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 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 275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 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u>4천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u>	<u>1천275만원 + (4천 50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u>																								

현행	개정						
<table border="1" data-bbox="219 304 681 359"> <tr> <td></td><td>100분의 5)</td></tr> </table>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u>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u>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u>급여액의 합계액</u>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u>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u> 다만, <u>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u>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u>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u>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u>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u>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100분의 5)	<table border="1" data-bbox="762 304 1239 502"> <tr> <td>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천45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td></tr> <tr> <td>1억원 초과</td><td>1천51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td></tr> </table>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u>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u>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u>총급여액</u>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u>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u> 다만, <u>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u>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에 따라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 중 <u>가장 많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u>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u>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u>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45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1천51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100분의 5)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45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1천51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현행		개정																					
<table><tr><th>총연금액</th><th>공제액</th></tr><tr><td>350만원 이하</td><td>총연금액</td></tr><tr><td>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td><td>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tr><tr><td>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td><td>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tr><td>1400만원 초과</td><td>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tr></table>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table><tr><th>총연금액</th><th>공제액</th></tr><tr><td>350만원 이하</td><td>총연금액</td></tr><tr><td>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td><td>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tr><tr><td>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td><td>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tr><td>1400만원 초과</td><td>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tr></table>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 공제”라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r> <th>〈근속연수〉</th><th>〈공제액〉</th></tr> <tr> <td>5년 이하</td><td>30만원×근속연수</td></tr> <tr> <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td></tr> <tr> <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td></tr> <tr> <td>20년 초과</td><td>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td></tr> </table> ②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5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생략)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table border="1"> <tr> <th>〈근속연수〉</th><th>〈공제액〉</th></tr> <tr> <td>5년 이하</td><td>30만원× 근속연수</td></tr> <tr> <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td></tr> <tr> <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td></tr> <tr> <td>20년 초과</td><td>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td></tr> </table>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현행	개정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부양가족</u>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마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 <u>제50조의 규정에 의한</u>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u>당해연도</u> 종합소득금액에서 <u>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u>외에 각 호별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부양가족</u>(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u>제1항에 따른</u>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 <u>제50조에 따른</u>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u>해당 과세기간</u> 종합소득금액에서 <u>기본공제</u>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

현행	개정
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u>1인당</u> 연 100만원 2.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u>1인당</u> 연 200만원 3. <u>당해</u>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u>제50조 제1항 제3호의</u>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u>1인당</u>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인 경우 <u>1인당</u>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u>입양자</u>의 경우 <u>1인당</u> 연 200만원 ②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u>일용근로자</u>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u>1인당</u>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u>해당연도의</u>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u>제50조의</u> 규정에 따른 <u>기본공제</u>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u>제50조의</u> 규정에 따른 <u>기본공제</u>와 <u>제51조의</u> 규정에 따른 <u>추가공제</u>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u>제2항의</u>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u>거주자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u>당해연도의</u> 종합소득금액에서	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u>1명당</u> 연 100만원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u>1명당</u> 연 200만원 3. <u>해당</u>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u>제50조 제1항 제3호에</u>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인 경우 <u>1명당</u>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u>입양자인</u> 경우 <u>1명당</u> 연 200만원 ② <u>제1항에</u>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u>일용근로자</u>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u>1명당</u>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u>해당 과세기간</u>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u>기본공제</u>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u>기본공제</u>와 <u>추가공제</u>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u>인적공제</u>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u>거주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u>해당 과세기간의</u> 종합소득금액에서

현행	개정
<u>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u>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u>당해</u>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u>저축불입액</u>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u>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u>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u>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u>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서 <u>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u>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u>해당</u>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u>연금저축납입액</u>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u> ③ <u>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u>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현행	개정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현행	개정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

현행	개정
를」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학생에 한한다</u>)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액에 한한다</u>)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u>다음의</u>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u>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u>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u>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u>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u>차감한</u>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u>소득금액의</u>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u>다음의</u>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를」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학생만 해당한다</u>)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액만 해당한다</u>)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u>다음 각</u>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u>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u>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u>지급하는 교육비</u>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u>뺀</u>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u>소득의</u>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u>다음 각</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현행	개정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현행	개정
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현행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삭제〉

현행	개정
<u>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삭 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개정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⑦ 삭제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⑨ 삭제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

현행	개정
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⑫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⑪ 특별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

현행	개정
<u>당해</u>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u>거소</u>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사유에 <u>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u>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에</u>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u>자로</u>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u>제51조의2</u>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u>해당하는</u> 여부의 판정은 <u>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u>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u>자</u> 또는 장애가 치유된 <u>자</u>에 <u>대하여는</u>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u>의한다.</u>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u>제51조의2</u>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u>제4항</u> 본문의 <u>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u> 해당되는 날이 있는 <u>경우에는</u> 공제대상자로 한다.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u>대하여는</u>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u>하지</u> 아니한다. ② 제70조 제1항 또는 <u>제74조의</u>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u>당</u>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u>거소에서</u>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유에 <u>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u>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u>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u>사람으로</u>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u>제51조의2</u>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u>해당하는지</u> 여부의 판정은 <u>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u>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u>사람</u> 또는 장애가 치유된 <u>사람</u>에 <u>대해서는</u>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u>따른다.</u>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u>제51조의2</u>에 따라 적용대상 <u>나이가</u> 정해진 경우에는 <u>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u> 해당되는 날이 있는 <u>경우에</u> 공제대상자로 본다.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u>대해서는</u>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u>적용하지</u> 아니한다. ② 제70조 제1항 또는 <u>제74조에</u>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u>제70조 제4항 제1호</u>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현행	개정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u>여부에</u>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u>제82조의 규정에 의한</u>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제52조 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u>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u>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u>한도 안에서</u>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u>계산하는</u>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u>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u>여부와</u>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u>제82조에 따른</u>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 제52조 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u>제43조 제3항에 따라</u>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u>한도에서</u>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u>계산할</u>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u>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현행		개정																					
<table><tr><th>종합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천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6</td></tr><tr><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td>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6)</td></tr><tr><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616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td></tr><tr><td>8천800만원 초과</td><td>1천666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td></tr></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table><tr><th>종합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천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6</td></tr><tr><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td>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tr><tr><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tr><td>8천800만원 초과</td><td>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td></tr></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table><tr><th>종합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천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6</td></tr><tr><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td>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5)</td></tr><tr><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tr><td>8천800만원 초과</td><td>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td></tr></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table><tr><th>종합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천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6</td></tr><tr><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td>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tr><tr><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tr><td>8천800만원 초과</td><td>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td></tr></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현행	개정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삭제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

현행	개정
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u>당해</u>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u>천재·지변</u>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u>경우에</u>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u>당해</u>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u>당해</u>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u>당해 연도</u>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u>당해 연도</u>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u>계산함에 있어</u>선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u>당해</u>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u>증명서</u>류를 <u>해당</u>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u>천재지변</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u>경우에</u>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u>해당</u>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u>그</u>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u>그</u>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u>해당 과세기간</u>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u>해당 과세기간</u>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u>계산할 때</u>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u>해당 과세기간</u>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u>끝나는 과세기간으로</u> 이월하여

현행	개정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u>범위안에서</u>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u>당해</u>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u>당해 조세조약이</u>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u>필요경비산입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u>상당하는</u>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u>받고자 하는</u> 자는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u>범위에서</u>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u>그 조세조약에서</u>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u>필요경비산입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u>과세기간에</u>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u>해당하는</u>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u>사업소득에 대한</u>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u>제1항에 따른</u>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u>적용받으려는</u> 자는

현행	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th><th>〈공제액〉</th></tr> <tr> <td>50만원 이하</td><td>산출세액의 10분의 55</td></tr> <tr> <td>50만원 초과</td><td>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30</td></tr> </table> 〈신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단서 삭제〉 <table border="1"> <tr> <th>〈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th><th>〈공제액〉</th></tr> <tr> <td>50만원 이하</td><td>산출세액의 100분의 55</td></tr> <tr> <td>50만원 초과</td><td>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tr> </tabl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 <tr> <td>8천만원 이하</td><td>50만원</td></tr> <tr> <td>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td><td>40만원</td></tr> <tr> <td>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td><td>30만원</td></tr> </table>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총급여액〉	〈공제한도〉	8천만원 이하	50만원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40만원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30만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총급여액〉	〈공제한도〉																				
8천만원 이하	50만원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40만원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30만원																				

현행	개정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table border="1"> <tr> <td>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td><td>20만원</td></tr> <tr> <td>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0만원</td></tr> <tr> <td>1억원 초과</td><td>0원</td></tr> </table>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	20만원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1억원 초과	0원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	20만원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1억원 초과	0원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						

현행	개정
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생략)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을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8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기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기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현행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table> <tr> <th>〈불입년수〉</th><th>〈공제액〉</th></tr> <tr> <td>5년 이하</td><td>30만원×불입년수</td></tr> <tr> <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50만원+50만원 × (불입년수-5년)</td></tr> <tr> <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400만원+80만원 × (불입년수-10년)</td></tr> <tr> <td>20년 초과</td><td>1천200만원+120만원× (불입년수-20)</td></tr> </table>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 (불입년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 (불입년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불입년수-20)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table> <tr> <th>〈납입연수〉</th><th>〈공제액〉</th></tr> <tr> <td>5년 이하</td><td>30만원× 납입연수</td></tr> <tr> <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50만원+50만원 × (납입연수-5년)</td></tr> <tr> <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400만원+80만원 × (납입연수-10년)</td></tr> <tr> <td>20년 초과</td><td>1천200만원+120만원× (납입연수-20)</td></tr> </table>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 (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 (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납입연수-20)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 (불입년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 (불입년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불입년수-20)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 (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 (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납입연수-20)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u>대통령령이</u>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u>당해</u>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u>당해</u>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u>전년도</u>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u>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u>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u>대하여는</u>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u>그</u>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u>당해</u>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u>해당</u>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u>그</u>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u>직전 과세기간의</u>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u>그</u>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u>기간에</u>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u>발급</u>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u>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u>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u>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u>그</u>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u>발급</u>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u>그</u>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현행	개정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u>기간내에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u>당해연도의</u>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u>기간내에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u>규정에 의한</u>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u>규정에 의하여</u>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에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u>규정에 의한</u>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u>규정에 의한</u>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u>규정에 의한</u>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u>규정에 의한</u>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u>중간예납추계액의</u> 계산은 다음 각 호의 <u>산식의</u>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u>기간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u>따라</u>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u>제1항에 따른</u>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u>해당</u>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u>기간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u>따라</u>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u>따른</u>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u>따른</u>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u>따라</u>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u>직전</u>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u>따른</u>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u>따른</u>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u>따른</u>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u>따른</u>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u>중간예납추계액</u>은 다음 각 호의 <u>계산식</u>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현행	개정
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left(\frac{\text{종합소득산출세액}}{2} \right)$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left(\frac{\text{종합소득산출세액}}{2} \right)$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현행	개정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①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2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현행	개정
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

현행	개정
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u>당해 연도의</u>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u>당해 연도의</u>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u>해당 과세기간의</u>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u>그 과세기간의</u>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현행	개정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 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
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u>을중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u>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⑤ <u>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u>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 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u> ③ <u>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u>	③ <u>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u>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⑤ <u>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u>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u> ③ <u>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u>

현행	개정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세액감면신청)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현행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 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 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 한다)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8절 사업장 <u>현황보고</u>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절 사업장 <u>현황신고</u>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현행	개정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사항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항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현행	개정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현행	개정
<u>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u> 바. <u>현금영수증가맹점이</u> 정당한 사유 없이 <u>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u>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u>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 <u>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u>	<u>경우</u> 바. <u>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u>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u>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u>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u>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u> 제81조(가산세) ① <u>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u>

현행	개정
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u>분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u>가산세의 적용은</u>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u>부분은</u>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u>분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u>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	되는 <u>분에 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u>가산세 적용은</u> 해당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u>부분에 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계산서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u>분에 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u>같은 항에</u>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u>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현행	개정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u>대통령령이</u>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u>대통령령이</u>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u>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u>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u>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u>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

현행	개정
<u>통령령이</u>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 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u>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선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현행	개정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u>가산</u>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u>상당</u>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u>상당</u>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text{수입금액} = \text{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times \text{미개설기간} / 365(\text{윤년에는 }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u>상당</u>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u>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u>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u>통보받은</u>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u>상당</u>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u>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u>경우</u>: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u>해당</u>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u>경우</u>: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u>해당</u>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수입금액} = \text{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times \text{미개설기간} / 365(\text{윤년에는 }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u>해당</u>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u>통보받은</u>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u>해당</u>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u>경우에는</u>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

현행	개정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거부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u>가산한다</u>. ⑪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u>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u>”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u>가산한다</u>.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u>미가입기간</u>”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	한다. 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u>더한다</u>.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u>미가입기간</u>”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⑫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

현행	개정
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⑬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82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⑬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삭제〉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현행	개정
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u>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제1<u>호외</u>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u>이를 적용한다</u>.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u>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u>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u>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그 밖에</u>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u>적용한다</u>.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u>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u>기한내에</u>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으로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u>기한까지</u>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현행	개정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u>결손금소급공제세액</u>”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u>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③ 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	소득세액(<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u>)을 한도로 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u>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u>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

현행	개정
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u>기타</u>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u>사업서비스업</u>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u>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u> :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u>그 밖에</u>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u>가구내 고용활동</u> :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현행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u>전사적</u>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u>상표</u>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u>지급</u> 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u>당해 사업자의</u>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u>대금의</u>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u>영위하는</u>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u>중도매인</u> 사. <u>지방자치단체장의</u>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u>영위하는</u>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u>영의 세율</u>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u>대금의</u>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u>전사적(全社的)</u>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u>상표</u>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u>받는</u>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u>자기의</u>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u>매출대금</u>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u>경영하는</u>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u>중도매인</u> 사. <u>지방자치단체의</u> 장의 <u>주관으로</u>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u>경영하는</u>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u>영세율(零稅率)</u>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u>매출대금 및 매입대금</u>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현행	개정
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u>적용받고자</u>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u>적용할 때</u>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u>유예기간</u>, <u>전자장부의 적용</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u>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u>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u>적용받으려는</u>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u>적용할 때</u>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u>유예기간</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u>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u>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② 제33조 제1항 제6호를 <u>적용함에 있어서</u>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u>당해</u>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u>여부에</u>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u>적용함에 있어서</u>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u>당해</u>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u>당해</u> 과세기간의 <u>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u>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 제1항을 <u>적용함에 있어서</u>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u>당해</u> 과세기간의 <u>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u>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u>계산함에 있어서</u>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3조 제1항 제6호를 <u>적용할 때</u>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u>그</u>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u>여부와</u>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u>적용하는 경우</u>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u>그</u>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u>그</u> 과세기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부금 2.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 제1항을 <u>적용하는 경우</u>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u>그</u> 과세기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u>계산할 때</u>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

현행	개정
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종을 <u>영위하는 사업자</u>에 <u>한한다</u>)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u>적용함에 있어서</u> <u>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u>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u>영위하는 경우</u>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u>당해</u>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u>직전과세기간</u>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u>산식</u>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u>당해</u>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text{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times (\text{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text{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u>이상인</u>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u>추징</u>한다.	에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종을 <u>경영하는 사업자</u>만 <u>해당한다</u>)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u>사업소득</u>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u>경영하는 경우</u>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u>해당</u>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u>직전과세기간</u>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u>계산식</u>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u>그</u>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text{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times (\text{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text{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u>이상일</u>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u>징수</u>한다.

현행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u>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u>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u>대하여는</u> 제65조 제3항 및 <u>같은 조 제5항은</u>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u>대하여는</u> 제8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u>증빙자료</u>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u>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u>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u>사업소득</u>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 <u>외에는</u>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u>대해서는</u> 제65조 제3항 및 <u>제5항은</u>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u>대해서는</u> 제8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u>증빙자료</u>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u>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제85조의2 및 제86조를 적용하는 경우</u> 결정·경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

현행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u>경우를 제외한다</u>)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u>수증자가</u>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u>채비지</u>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u>附贈與</u>(「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u>경우는 제외한다</u>)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u>수증자(受贈者)</u>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u>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u>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u>채비지(替費地)</u>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u>대하여는</u>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u>처분으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2.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u>분합으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3.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u>고가주택</u>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u>대해서는</u>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u>처분으로</u> 발생하는 소득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u>분합(分合)으로</u> 발생하는 소득 3.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u>고가주택</u>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②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

현행	개정
<u>포함한다</u>)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u>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u>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u>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u>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u>	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u>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u>경우나</u>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u>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u>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u>제104조 제3항에서</u>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u>대해</u> <u>서는</u>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u>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u>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u>제103조에 따른</u> 양도소득기본공제

현행	개정
제93조(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현행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u>값</u> 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u>다음 각목의 1에</u>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u>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u>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u>일반이용자에 비하여</u>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u>일원이</u>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u>일반이용자에 비하여</u>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u>당해</u>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u>고려</u>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u>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u>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u>영업권과</u>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u>일반이용자보다</u>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u>구성원이</u>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u>일반이용자보다</u>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u>그</u>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

현행	개정																																				
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u>감안하여 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u>규정에</u>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u>규정을</u>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u>규정에</u>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u>규정에</u>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u>보유기간이</u>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u>부수되는</u>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table> <tr> <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00분의 10</td></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00분의 12</td></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td>100분의 15</td></tr> <tr> <td>6년 이상 7년 미만</td><td>100분의 18</td></tr> <tr> <td>7년 이상 8년 미만</td><td>100분의 21</td></tr> <tr> <td>8년 이상 9년 미만</td><td>100분의 24</td></tr> <tr> <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100분의 27</td></tr> <tr> <td>10년 이상</td><td>100분의 30</td></tr> </table>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u>규정에</u>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u>보유기간이</u>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u>떨린</u>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table> <tr> <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00분의 10</td></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00분의 12</td></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td>100분의 15</td></tr> <tr> <td>6년 이상 7년 미만</td><td>100분의 18</td></tr> <tr> <td>7년 이상 8년 미만</td><td>100분의 21</td></tr> <tr> <td>8년 이상 9년 미만</td><td>100분의 24</td></tr> <tr> <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100분의 27</td></tr> <tr> <td>10년 이상</td><td>100분의 30</td></tr> </table>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r> <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00분의 24</td></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00분의 32</td></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td>100분의 40</td></tr> <tr> <td>6년 이상 7년 미만</td><td>100분의 48</td></tr> <tr> <td>7년 이상 8년 미만</td><td>100분의 56</td></tr> <tr> <td>8년 이상 9년 미만</td><td>100분의 64</td></tr> <tr> <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100분의 72</td></tr> <tr> <td>10년 이상</td><td>100분의 80</td></tr> </table>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table border="1"> <tr> <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00분의 24</td></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00분의 32</td></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td>100분의 40</td></tr> <tr> <td>6년 이상 7년 미만</td><td>100분의 48</td></tr> <tr> <td>7년 이상 8년 미만</td><td>100분의 56</td></tr> <tr> <td>8년 이상 9년 미만</td><td>100분의 64</td></tr> <tr> <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100분의 72</td></tr> <tr> <td>10년 이상</td><td>100분의 80</td></tr> </table>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현행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현행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④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현행	개정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u>제4호</u>의 금액을 <u>가산한</u>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을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u>전일까지</u>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u>해당</u>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u>제1호 외의</u>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u>가산한</u>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u>제94조 제1항 제1호의</u>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u>계산함에 있어서</u>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u>제3항의</u>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u>어느 하나의</u>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u>제3호</u>의 금액을 <u>더한</u>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u>목에서</u>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u>전날까지</u>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u>그</u>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u>그 밖의</u>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u>더한</u>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u>제94조 제1항 제1호에</u>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u>계산할 때</u>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u>제3항에</u>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

현행	개정
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u>제3항의 규정</u>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u>소요된</u>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u>계산</u>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u>소유기간</u>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u>규정에 의한</u>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u>방법에 의하여</u>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u>계산함에 있어서</u>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u>규정에 따른</u>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u>규정에 의한</u>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	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u>제3항에도</u>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u>계산</u>에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u>기재된</u>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u>그</u>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방법으로</u>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u>그</u>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u>계산할 때</u>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u>따른</u>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u>따른다</u>.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u>따른</u>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

현행	개정
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u>참작하여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방법에 <u>의하여</u>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u>지가</u>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u>의하여</u>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u>라목의</u> 규정에 해당하는 <u>건물을</u>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u>참작하여</u>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u>부수되는</u>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u>감안하여 대통령령이</u>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u>이들에</u> <u>부수되는</u> 토지를 포함한다)에 <u>대하여는</u>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u>참작하여</u>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u>경우에</u>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u>의하여</u>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u>의하고</u>,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u>참작하여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u>의한</u>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에 <u>따라</u>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u>지가(地價)</u>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u>방법에 따라</u>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u>라목에</u>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u>고려하여</u>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u>떨린</u>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u>이에</u> <u>떨린</u> 토지를 포함한다)에 <u>대해서는</u>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u>고려하여</u>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u>경우에</u>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u>따라</u>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u>따르고</u>,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에 <u>따른</u>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행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u>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u>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u>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u> 등을 <u>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u> 평가한 가액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u>, 장부분실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u>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u>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u>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u> 평가한 가액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삭제〉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u>,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현행	개정
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출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출방법”이란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u>알려야</u>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u>대통령령</u>

현행	개정
<u>명령</u>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 ①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u>소유자</u>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u>재산정·고시</u>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u>통지</u>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u>으로</u>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u>소유자</u>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u>재산정 및 고시</u>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u>알려</u>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

현행	개정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u>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u>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u>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u>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u>당해</u>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u>산정함에 있어서</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불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u>당해</u>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u>당해연도의</u>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u>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u>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u>해당</u>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u>산정하는 데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u>그</u>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u>해당 과세기간의</u>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현행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현행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

현행	개정
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u>대통령령이</u>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u>대통령령이</u>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u>제104조의3의</u>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u>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u> 규정에 의한 자산 중 <u>제104조의3의</u>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u>제94조 제1항 제3호의</u> 규정에 의한 자산 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u>가목 및 나목외의</u>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u>당해</u>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u>다음 각호의 1에</u>	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u>제104조의3에</u>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u>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u> 따른 자산 중 <u>제104조의3에</u>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u>제94조 제1항 제3호에</u> 따른 자산 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u>그 밖의</u>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u>해당</u>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현행	개정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u>당해</u>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u>당해</u>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u>당해</u>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u>새로이</u>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 제3호에서 “<u>미등기양도자산</u>”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u>자산</u>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u>가산</u>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u>지정지역</u>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u>지정지역</u>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u>지정지역</u>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u>급등하거나</u> 급등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u>그</u>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u>그</u>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u>새로</u>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 제10호에서 “<u>미등기양도자산</u>”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u>자산</u>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u>더</u>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u>지정지역</u>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u>떨린</u>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u>지정지역</u>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u>지정지역</u>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u>급등하였거나</u> 급

현행	개정
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u>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u>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u>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u>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u>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u>)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u>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u>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u>지정지역안의 부동산</u>”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u>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u>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u>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u>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u>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u>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u>)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u>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u>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u>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u>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u>”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현행	개정
제2호의7에서 “<u>비사업용 토지</u>”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u>대통령령이</u>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존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것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u>논·밭</u>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존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

현행	개정
나.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u>감안하여</u>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것</u>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u>감안하여</u>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것</u>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u>영위하는</u>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u>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u>대통령령이 정하는</u> 기간이 <u>경과되지 아니한</u>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u>영위하지</u>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u>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u>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u>제3호의 규정에 의한</u> 재산세 <u>별도합산</u>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u>감안하여</u>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것</u>	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u>고려하여</u>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u>고려하여</u>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u>경영하는</u>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u>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기간이 <u>지나지 아니한</u>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u>경영하지</u>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u>관계 법률에 따라</u>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u>제3호에 따른</u> 재산세 <u>별도합산과 세대상</u>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u>고려하여</u>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현행	개정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개정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에

현행	개정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삭 제〉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
구하고, <u>당해</u>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u>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u>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u>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u>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u>필요경비의</u>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u>제5항의</u>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u>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u>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u>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u>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u>제114조의</u>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u>제82조 및 제118조의</u>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u>제111조의</u>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고, <u>해당</u>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u>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u>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u>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u>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u>필요경비</u>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u>제5항에</u>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u>해당 과세기간의</u>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u>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u>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u>제107조에</u>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u>제114조에</u>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u>제82조·제118조</u>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u>제111조에</u>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

현행	개정
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u>제97조의 규정</u>에 따른 가액에 <u>의하여야</u> 한다. ⑤ <u>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u>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u>의하여</u>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u>소명</u> 여부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경우에 <u>해당하는</u>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u>제4항의 규정</u>에 불구하고 「<u>부동산등기법</u>」 제57조 제4항의 <u>규정</u>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u>제4항의 규정</u>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u>의하여</u>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u>당해</u>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u>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u>을 <u>적용함에 있어서</u>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u>의하는</u> 경우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사유로 <u>장부 기타 증빙서류</u>에 <u>의하여 당해</u>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u>제97조에</u> 따른 가액에 <u>따라야</u> 한다. ⑤ <u>제94조 제1항 제1호</u>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u>따라</u>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u>소명(疏明)</u> 여부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 <u>해당할</u>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u>제4항에도</u> 불구하고 「<u>부동산등기법</u>」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u>제4항을 적용할 때</u>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u>따라</u>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u>그</u>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u>경우에는</u>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u>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u>을 <u>적용할 때</u>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u>따라</u> 정하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유로 <u>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u>에 <u>의하여 해당</u>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u>대통령령으로</u>

현행	개정
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현행	개정
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u>경과된 날부터 3월</u>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u>초과하는</u>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u>추가납부세액</u>”이라 한다)을 <u>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u>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u>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u> 제118조(준용규정)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u>지난 날부터 3개월</u>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u>초과할</u>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u>추가납부세액</u>”이라 한다)을 <u>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u>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u>과세기간별로</u>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u>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u>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현행	개정
<u>당해</u>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u>주소</u> 또는 <u>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u>)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u>당해 연도에</u> 국외에 있는 자산을 <u>양도함에 따라</u>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2.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것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산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u>당해</u>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u>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u>,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u>당해</u>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u>참작하여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방법에 의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u>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u>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u>당해</u> 자산의 취득에 <u>소요된</u> 실지거래가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u>국내에 주소</u> 또는 <u>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u>)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u>해당 과세기간에</u> 국외에 있는 자산을 <u>양도함으로써</u>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산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u>따른</u>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u>그</u>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u>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u>,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u>그</u>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u>양도차익을 계산할 때</u>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u>해당</u>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

현행	개정
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u>의하되</u>, 시가를 산정하기 <u>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u>에 <u>의한다</u>. 2. 삭제 3.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u>계산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u>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u> 1. 제118조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2의2. 삭제 3.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u>가목 외의</u>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u>당해</u>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	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u>따르되</u>, 시가를 산정하기 <u>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에 <u>따라</u>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u>계산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u>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u> 1. 제118조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u>그 밖의</u>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u>해당</u>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

현행	개정
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	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현행	개정
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현행	개정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현행	개정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삭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u>당해</u> 대가 및 그 권리등의 <u>양도로 인하여</u>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u>사용지</u>를 기준으로 하여 <u>당해</u>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u>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u> 나. <u>산업상·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u>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u>기타의 유가증권</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u>그</u> 대가 및 그 권리등의 <u>양도로</u>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u>사용지(使用地)</u>를 기준으로 하여 <u>그</u>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u>지급되더라도</u>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u>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u> 나. <u>산업·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u>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u>그 밖의 유가증권</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현행	개정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 제5호 다목에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라. (생략)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현행	개정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u>제공받은</u>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 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u>경우에</u>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소득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56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u>대하여는</u>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 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 제12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u>외국금융기관</u>(이하 “<u>적격외국금융기관</u>”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u>적격외국금융기관</u>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u>규정</u> 외에 국내에서 <u>하는</u>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u>받은</u>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u>경우에는</u>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소득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156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u>대해서는</u>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 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 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u>외국금융회사등</u>(이하 “<u>적격외국금융회사등</u>”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u>적격외국금융회사등</u>의 자격, 승인 및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

현행	개정
거주자 또는 <u>적격외국금융기관</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u>신설</u>〉	거주자 또는 <u>적격외국금융회사</u>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u>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u> 2.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u>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u>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u>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u>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u>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u>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u>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u>

현행	개정
나. <u>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u> <u>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u> 6. <u>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u>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u> ④ <u>제1항에</u>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u>다음 각호에</u>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u>보관을 위하여만</u>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u>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u>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u>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u>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u>당해</u>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	나. <u>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u> <u>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u> 6. <u>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u>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u>경영하는 경우에는</u>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u>제1항에서</u>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u>다음 각 호에서</u>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u>보관만을 위하여</u>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u>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u>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u>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u>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u>해당</u>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

현행	개정
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단서 신설>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

현행	개정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에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에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현행	개정
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u>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u>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 제3항 및 <u>제4항에</u>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u>그 과세표준과</u>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u>당해</u>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u>의하여</u>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 <u>제12호에</u>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u>대하여는</u>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 <u>제13호에</u>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u>대하여는</u>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u>동항에</u>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u>제120조의 규정에 의한</u>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 제12호의 <u>규정에 의한</u>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u>당해</u>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u>소득의 금액이</u>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u>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u>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 제3항 및 <u>제4항에서</u>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u>과세표준과</u>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u>해당</u>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u>따라</u>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 <u>제11호에서</u>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u>대해서는</u>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 <u>제12호에서</u>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u>대해서는</u>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u>같은 항에서</u>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u>제120조에 따른</u>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u>제119조 제11호에 따른</u>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u>그</u> 수입금액으로 한다.

현행	개정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1.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 제1항 제5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현행	개정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u>의한</u>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u>제80조의 규정을</u>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u>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u>이자소득금액</u> 2. <u>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u> 3. <u>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u> 4. <u>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u>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u>따른</u>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u>제80조를</u>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u>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u>따라</u>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u>이자소득</u> 2. <u>배당소득</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u> 4. <u>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u> 가. <u>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u> 나. <u>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u>

현행	개정
4의2. <u>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u> 5. <u>기타소득금액</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u>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u> 나. <u>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u> 다. <u>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u> 6. <u>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u> 7. <u>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③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u>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u>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u>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u>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④ <u>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u>	<u>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u> 5. <u>연금소득</u> 6. <u>기타소득</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소득</u>은 제외한다. 가. <u>제8호에 따른 소득</u> 나. <u>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u> 다. <u>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u> 7. <u>퇴직소득</u>.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u>은 제외한다. 8.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u> ② <u>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u> ③ <u>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u>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u>제2항을 적용한다.</u> 〈삭 제〉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u>

현행	개정
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u>소득금액</u>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u>경우</u>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u>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⑦ 제1항 제7호의 <u>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 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⑧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u>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u>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u>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u>규정에 의한</u>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u>규정에 의하여</u>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u>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u>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u>소득</u>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u>경우에는</u>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u>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u>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u>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u> ⑦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u>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u>반기(半期)</u>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u>따른</u>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u>따라</u>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u>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u>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u>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u> 소득세를 원천징

현행	개정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u>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u>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u>당해</u>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u>당해</u>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u>경우의</u> 그 이자와 할인액에 <u>대하여는</u>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u>이익에 대하여는</u> 100분의 25 〈<u>신설</u>〉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u>배당소득에 대하여는</u>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3.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u>대하여는</u> 100분의 3 4. <u>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u> 기본세율 4의2. <u>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u>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u>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u>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u>대하여는</u> 기본세율 나. <u>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u>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u>대하여는</u> 100분의 5 5. <u>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u>	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u>이자소득에 대해서는</u>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u>그</u>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해당</u>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u>경우</u> 그 이자와 할인액에 <u>대해서는</u>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u>이익에 대해서는</u> 100분의 25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u>대해서는</u> 기본세율 라. <u>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u> 100분의 14 2. <u>배당소득에 대해서는</u>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u>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u>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u>대해서는</u> 100분의 25 나. <u>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u> 100분의 14 3. <u>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u> 100분의 3 4. <u>근로소득에 대해서는</u> 기본세율. 다만, <u>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u> 100분의 8로 한다. 5. <u>연금소득에 대해서는</u>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u>제20조의3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u> 연금소득에 <u>대해서는</u> 기본세율 나. <u>제20조의3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u>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u>대해서는</u> 100분의 5 〈<u>삭제</u>〉

현행	개정
<u>100분의 8</u>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 제14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현행	개정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u>소득금액에 대하여</u>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2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u>소득금액에</u>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u>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u>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u>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u>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133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u>소득에 대해서</u>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u>지급금액에</u>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회사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u>경우 그 정기예금</u>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u>이자소득</u>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u>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u>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

현행	개정
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

현행	개정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u>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u>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u>대하여는 제1항에</u>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u>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u>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해당 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현행	개정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현행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u>의하여</u>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u>대하여</u>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u>가산세액을 제외한다</u>)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u>연도</u>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u>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u>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u>연도</u>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u>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u>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u>징수세액 계산에 있어</u> 지급대상기간의 <u>적용방법 기타</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u>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u>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u>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u>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신고한 내용에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u>따라</u>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u>대해서</u>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u>가산세액은 제외한다</u>)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u>과세기간</u>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u>제1호에 따라</u>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u>과세기간</u>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u>경우</u>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u>끝수</u>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u>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u>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u>징수세액을 계산할 때</u> 지급대상기간의 <u>적용방법과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u>해당 과세기간</u>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u>사람</u>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u>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u>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u>따라</u> 신고한 내용에 따

현행	개정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u>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u> 〈신설〉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u>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u> ③ <u>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u>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u>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u>다. ⑤ <u>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u>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u>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u>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의 경우 <u>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u> ③ <u>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u>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u>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u> ⑤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현행	개정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불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나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현행	개정
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당해 연도의</u> 중도에 취직한 자는 <u>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u>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u>일용근로자에</u>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u>당해 연도중에</u>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해당 과세기간</u> 중도에 취직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최초로 받기 전에 <u>그 신고서를</u>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u>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u>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u>해당 과세기간</u> 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u>제167조 제1항 단서</u>를 준용한다.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u>당해 연도의</u>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u>신근무지</u>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u>연도의</u>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u>때에는</u> <u>전근무지에서</u> <u>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u> 퇴직한 날이 속하는 <u>달분까지</u>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u>신근무지</u>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u>해당 과세기간</u>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u>새 근무지</u>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u>과세기간의</u>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u>경우에는</u> <u>이전 근무지에서</u> <u>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u> 퇴직한 날이 속하는 <u>달까지</u>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u>새 근무지</u>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u>당해</u>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u>해당</u>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

현행	개정
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u>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 다만,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u>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u>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u>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u>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u>의하여</u>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u>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u>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u>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u>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u>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u>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u>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u>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u>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u>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u>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u>따라</u>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u>제20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u>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u>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u>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u>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u>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현행	개정
① 제1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	① 제14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4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현행	개정
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현행	개정
	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신설〉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현행	개정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

현행	개정
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u>당해 연도의 12월 31일</u>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u>1월 31일</u>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u>1월 31일</u>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u>의하여</u>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u>3월</u>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u>3월</u>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u>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u>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u>1월 31일</u>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u>1월 31일</u>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u>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u>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u>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u>당해 연도에</u>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u>경우의 세액</u>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u>당해연도에</u>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u>경우의 세액</u>은 그 이미 지급된 <u>퇴직소득 금액</u>과 그 지급될 <u>퇴직소득금액</u>을 <u>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u>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u>퇴직소득금액</u>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u>사람</u>의 퇴직소득을 <u>해당 과세기간</u>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u>경우</u>에는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u>사람</u>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u>2월 말일</u>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u>경우</u>에는 그 퇴직소득은 <u>2월 말일</u>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u>따라</u>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u>3개월</u>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u>경우</u>에는 그 퇴직소득은 그 <u>3개월</u>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u>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u> 결정된 처분에 <u>따라</u> 다음 연도 <u>2월 말일</u>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u>경우</u> 그 퇴직소득은 <u>2월 말일</u>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u>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u>지급할 때</u>에 원천징수하는 <u>소득세</u>는 <u>다음 각 호에 따라</u> 계산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u>해당 과세기간</u>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u>경우</u>: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u>해당 과세기간</u>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u>경우</u>: 그 이미 지급된 <u>퇴직소득</u>과 그 지급될 <u>퇴직소득</u>을 <u>더하여</u> 계산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u>퇴직소득</u>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현행	개정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u> 1. <u>을중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u> 2. <u>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u>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u>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중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u>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u>을중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u>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u>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u>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u> 1.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 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

현행	개정
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u>지급하는</u>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u>소득으로서 그 발생한 소득이</u>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u>당해 소득을 지급하는</u>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u>제24조</u>에 따른 수입 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u>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u>	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u>지급할</u>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u>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u>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u>그 소득을 지급할</u>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u>제39조</u>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u>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u>

현행	개정
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

현행	개정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u>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하여</u>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u>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u>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u>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u>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 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u>당해</u>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u>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u>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u>국내원천소득금액에</u>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u>해당</u>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u>해당</u>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u>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u>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u>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u>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u>해당 국내원천소득을</u>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 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u>해당</u>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u>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u>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u>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u>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u>그</u>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u>그</u>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⑥ 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19조 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제119조 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19조 제12호 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19조 제12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

현행	개정
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u>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u>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u>면제신청을</u> 하여야 한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u>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u> 지급하는 자 또는 <u>채권등의 이자등을</u>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중 <u>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u>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u>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u> 불구하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u>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u>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	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u>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u>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u>면제를 신청하여야</u> 한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u>채권등의 이자등을</u>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면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u>그 비거주자의</u>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중 <u>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u>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u>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u> 불구하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u>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

현행	개정
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6조의5(비거주연예인들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 제6호·제7호 및 제13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 제6호·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현행	개정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들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u>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u>이를</u>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u>분배한</u>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u>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u>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u>아니한 것에 대하여</u> 납세의무를 진다.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부성실 가산세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부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u>기간내에</u>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u>납부한</u>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u>상당하는</u> 금액을 한도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비거주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u>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u>그 소득세를</u>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u>분배하였을</u>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u>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u>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u>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u> 납세의무를 진다.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u>기간에</u>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u>납부하였을</u>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u>해당하는</u> 금액을 한도로

현행	개정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u>가산한</u>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u>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u>자진납부일</u>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u>금융기관</u>이 연체대출금에 <u>대하여</u>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u>지급받는</u> 자가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u>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u>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u>가산하여</u>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u>미군군에 대하여는</u>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u>대하여는</u>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납세조합부납가산세)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u>당해</u> 소득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u>더한</u>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u>제2항에 따른다.</u>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u>납부일</u>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u>금융회사등</u>이 연체대출금에 <u>대해서</u>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u>받는 사람이</u>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u>정해진 기간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u>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u>더하여</u>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u>미군에 대해서는</u>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u>대해서는</u>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u>해당</u> 소득

현행	개정
세를 매월 징수하여 <u>기한내</u>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u>납부한</u>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u>미달한</u> 세액의 100분의 5에 <u>상당하는</u>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u>가산한</u> 것을 <u>세액</u>으로 하여 <u>납부</u>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u> 금액을 “<u>납세조합납가산세액</u>”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u>당해</u>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세를 매월 징수하여 <u>기한까지</u>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u>납부하였을</u>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u>미달하게 납부한</u> 세액의 100분의 5에 <u>해당하는</u>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u>더한</u> 것을 <u>세액</u>으로 하여 <u>납부</u>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u>따라 산출세액에 더한</u> 금액을 “<u>납세조합 불납가산세액</u>”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u>해당</u>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u>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u>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u>의하여</u>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u>비치하고</u>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u>제1항의</u> <u>규정에</u> 따른 장부를 비치·<u>기장</u>한 것으로 본다. ③ <u>제2항의</u> <u>규정에</u> 따른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u>사업자는 이를</u>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u>사업자는 이를</u>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u>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u>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u>경리</u>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u>공통경비</u>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u>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u>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u>따라</u>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u>갖추어 놓고</u>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u>제1항에</u> 따른 장부를 비치·<u>기록</u>한 것으로 본다. ③ <u>제2항에</u> 따른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u>사업자는</u>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u>사업자는</u>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u>제1항이나 제2항의</u> 경우에 사업소득에 <u>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u>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u>회계 처리</u>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u>공통경비</u>는 각 총수입금액에

현행	개정
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u>기장하여야</u>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u>대하여는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u>증빙서류</u> 등을 <u>비치하여야</u>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u>비치한 때에는</u> 장부를 비치·<u>기장한 것으로</u>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u>규정에 의한</u> 장부·증빙서류의 <u>기장·비치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u>지출증빙</u>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u>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u>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u>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u>증빙서류를 수취하고</u>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u>증빙서류를</u>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u>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u>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u> 한다. 다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례하여 <u>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u>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u>기록하여야</u>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u>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u>증명서류</u> 등을 <u>갖춰 놓아야</u>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u>갖춰 놓은 경우에는</u> 장부를 비치·<u>기록한 것으로</u>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u>규정에 따른</u> 장부·증명서류의 <u>기록·비치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u>지출증명</u>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u>사업소득금액</u>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u>계산할 때 제27조에</u> 따라 필요경비를 <u>계산하려는 경우에는</u>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u>증명서류를 받아</u>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u>증명서류를</u>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u>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u>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증명서류를 받아야</u>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	〈삭 제〉 〈삭 제〉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

현행	개정
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한 이내</u>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u>동조</u>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u>동법</u>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u>기타</u>의 소득을 구분하여 <u>기장</u>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u>총수입금액</u>의 계산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는 <u>경우</u>,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한까지</u>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u>같은 조</u>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u>같은 법</u>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u>추가</u>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u>등</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 제59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u>그 밖</u>의 소득을 구분하여 <u>장부</u>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u>총수입금액</u>은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현행	개정
의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u>사용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u>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u>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대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u>발급하여서는</u>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u>경우에 한정한다</u>)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u>발급받은</u>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u>사용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u>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u>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대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u>발급해서는</u>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u>항에서</u>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u>경우만 해당한다</u>)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u>거래를</u>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u>받은</u>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현행	개정
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 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 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

현행	개정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합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

현행	개정
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u>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u>당해</u>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u>교부하여야 한다.</u>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u>교부하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u>대하여는</u> 세관장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u>교부하여야 한다.</u>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u>교부하는</u>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u>의하여</u> <u>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u>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u>교부받은</u>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u>교부하였거나</u>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u>대하여는</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u>교부하였거나</u>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u>교부</u>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u>제출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u>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u>해당</u>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u>발급하여야 한다.</u> 다만, 제1항에 따라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u>발급하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u>대해서는</u> 세관장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u>발급하여야 한다.</u>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u>발급하는</u>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u>따라</u> <u>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u>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u>받은</u>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u>발급하였거나</u>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u>대해서는</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u>따라</u> 계산서등을 작성·<u>발급하였거나</u>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u>발급</u>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u>제출에</u>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후

현행	개정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u>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u>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7. <u>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u> 8.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u> ② 제1항 각호의 소득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u>지급명세서를</u>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u>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u>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u> 8.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u>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
⑤ 삭제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u>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u> ⑦ 제163조 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u>규정에 의하여</u>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국세청장은 제1항 제5호의 <u>규정에 따른</u>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u>규정에 따른</u>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u>규정에 의한</u>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의 <u>규정에 의한</u>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u>규정에 따른</u>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

현행	개정
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현행	개정
받은 경우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받은 경우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현행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삭제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현행	개정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u>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u>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u>당해</u> 사업에 관한 사정에 <u>정통한 자에 대하여</u>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u>경우에는</u>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u>제1조의</u>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u>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u>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u>해당</u> 사업에 관한 사정에 <u>정통(精通)한 자에게</u>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u>경우</u>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u>제2조에</u>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현행	개정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u>용역</u>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u>소송</u>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하여 <u>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 여부를</u>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u>실시하여야</u>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u>상당</u>하는 인원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u>항</u>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u>용역</u>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u>과세기간</u>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u>소송</u>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u>과세기간</u>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u>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u>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u>하여야</u>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u>해당</u>하는 인원에 대하여

현행	개정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마목, 제20조의3 제1항 제6호, 제20조의3 제2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5호, 제129조 제3항, 제143조의2 제1항, 제143조의6 제1항 및 제15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1항 및 제162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5호 바목·사목,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5호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 제1항·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4호 마목, 제20조의3 제1항 제6호, 제20조의3 제2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5호, 제129조 제3항, 제143조의2 제1항, 제143조의6 제1항 및 제15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제8항 단서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의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가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